#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 안 자 : 황숙희 의원 외 6인

## 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행정안전부 제17893호, 2022.1.13. 시행)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인용 조문 변경 개정(안 제1조)

- 목적 :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제40조로 변경

나. 공무원 소속 변경(안 제2조)

-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일의 기준이 되는 성주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의 공무원 소속을 성주군의회 공무원으로 변경

##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법」인용 법조문 정비와 공무원 소속 변경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